환경관계자료

환경청·상공부·공업진흥청 고시

◉환경청고시제86-10호

취급제한유해성독극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독극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86년 6월11일

환 경 청 장

품 명	취 급 제 한 내 용
○헥사 클로로 헥사 하이드로 디메타노 나프탈렌(Hexachloro hexahydro dimethano naphthalene : HHDN, Aldrin)및 이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옥타클로로 메탄테트라하이드로 인단[1, 2, 4, 5, 6, 7, 8, 8-Octa chloro-4, 7-methan-3a, 4, 7, 7a-tatra hydroindane : Chlordan(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헥사클로로 에폭시 옥타하이드로 엔도, 엔도 디메타노 나프탈렌[1, 2, 3, 4, 10, 10-Hexachloro-6, 7, -epoxy-1, 4, 4a, 5, 6, 7, 8, 8a-Octahydro-endo, endo-1, 4(5, 8)-dimethano naphthalene : Endri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헥사클로로 에폭시 옥타 하이드로 엔도·엑소디메타노 나프탈렌(1, 2, 3, 4, 10, 10, -Hexachloro 6, 7-epoxy-1, 4a, 5, 6, 7, 8, 8a-Octahydro-endo, exo-1, 4 : 5, 8-dimethano naphthalone : HEOD, Dieldri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헵타 클로로 테트라 하이드로 메타노 인덴[1, 4, 5, 6, 7, 8, 8-Heptachloro-3a, 4, 7, 7a-tetra hydro-4, 7-methano-indene : Drinox, Heptachloro)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헥사 클로로 싸이클로 헥산(Hexa chloro cyclohexane : Lindene, BHC, HCH) 및 이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트리 클로로 비스(파라-클로로 페닐)에탄[1, 1, 1-Trichloro-2, 2-bis(p-chlorophenyl)ethane : D. D. T]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피 엠 에이(Phenylmercury Acetate : PMA)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엔-(2-메틸-4-클로로페닐)-엔·엔-디메틸포름아미진[N-(2-Methyl-4-Chlorophenyl)-N·N-dimethyl formamizine : Chlordimeform Galecron]과 그 염류 및 그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	〃
○아미노 클로로 나프토 퀴논[2-Amino-3-chloro-1, 4-naphthoquinone : A. C. N, Moget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염화 캄펜[Chlorinated-2, 2-dimethyl-3-methyl-3-methylene bicyclo-(2, 2, 1) haptane : Chlorinated Camphene Toxaphen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피티에이비(Phenylmercurie Triethanol Amonium Borate : PTA-B)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품 명	취 급 제 한 내 용
○디에칠파라니트로 페닐지오포스페이트(Diethyl-nitrophenyl : hosphorthionate : ETHYL-PARATHI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디메칠파라니트로 페닐지오포스페이트(Diemethyl-P-Nitrophenyl Thiophosphosphate : METHYL-PARATHI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헥사클로로 헥사하이드로 메타노 벤조디옥사 치에핀-3-옥사이드(6, 7, 8, 9, 10, 10-Hexachloro-1, 5, 5a 6, 9, 9a-hexahydro-6, 9-methano-2, 4, 3-benzodioxathiepin-3-Oxide : Endosulfa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제조용(발작물, 과수, 뽕나무, 및 산림해충 방제용에 한함)은 제외
○메틸(메틸티오)프로피온 알데하이드—오(메틸 카바오일)옥심〔2-Methyl-2-(methylthio)-propion aldehyde-O′ (methyl carbamoyl) oxime : Aldicarb〕 및 이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제조용(소나무 해충방제용에 한함)은 제외
○피씨피 및 그 염류(Penta chlorophenol : PCP and Its Salts)와 그 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제조용 피씨피 동염류는 제외
○2, 4-디클로로 페녹시 초산(2, 4-Dichloro phenoxy acetic acid : 2, 4-D, Hedonal)	항공방제용과 사료작물 및 잔디의 제초제용은 제조 및 사용금지
○아비산(ARSENIOUS ACID)	국내 신규제조업금지
○비산연(LEAD ARSENAT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스트리키닌(Striquinine)과 그 염류 및 그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메틸-(4-브로모-2, 5-디클로로메닐) 치오노벤젠 포스페이트(0-Methyl-0-(4-bromo. 2, 5-dichloro phenyl) phenyl thio phosphate : phosvel Leptophos)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1-(4-니트로페닐-3-(3-피리질메틸)우레아〔1-(4-Nitrophenyl)-3-(3-Pyrizyl methyl) Urea:RH-787. Vacor〕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질산탈륨(Thallium nitrat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초산탈륨(Thallium acetat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황산탈륨(Thallium Sulfat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환경청고시제86-11호

자동차소음허용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8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6년 6월13일

환 경 청 장

자동차소음허용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 및 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 ①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제작(조립 및 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종류별		소음항목 / 시행시기	가속주행소음(dB(A)) 83. 7. 1	가속주행소음(dB(A)) 88. 1. 1	가속주행소음(dB(A)) 90. 1. 1	배기소음(dB(A)) 83. 7. 1	배기소음(dB(A)) 88. 1. 1	경적소음(dB(C)) 83. 7. 1
보통 및 소형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92이하	87이하	85이하	80이하	75이하	115-90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89이하	86이하	83이하	78이하	73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85이하	82이하	80이하	74이하	69이하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차		82이하	80이하	78이하	70이하	65이하	

2륜자동차(측차부 2륜자동차 및 원동기부 자전거 포함)	총배기량 125cc초과	84이하	80이하	78이하	72이하	72이하
	총배기량 50cc초과 125cc이하	82이하	78이하	75이하	68이하	68이하
	총배기량 50cc이하	80이하	75이하	72이하	64이하	64이하

②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종류별 \ 소음항목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보통 및 소형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10이하	115-90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차	105이하	
2륜자동차(측차부 2륜자동차 및 원동기부 자전거 포함)	총배기량 50cc초과	115이하	
	총배기량 50cc이하	105이하	

제3조 (제작자동차의 최초검사) ①새로운 형식의 자동차를 재작하는 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동차 소음 최초검사 신청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의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청장이 지명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최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제작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소음 최초검사 생략 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최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동차 제작국의 관계서류가 첨부된 10대미만의 수입자동차
2. 50cc미만의 원동기를 자가 부착한 원동기부 자전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를 입회한 관계공무원이 임의 선정한 다음 대수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작자동차는 3대 이상
   (다만, 주문생산에 의한 2대이하 제작시에는 당해 제작대수에 한한다)
2. 10대미만의 수입자동차는 1대
3. 10대이상의 수입자동차는 2대이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검사를 받은 자동차중 그 구조나 장치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형식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이하 동일형식의 변경 자동차라 한다) 자동차 제작자는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소음 최초검사 생략 승인신청서에 의거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최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차 대
2. 차종(다만, 차체형상 및 주요치수가 같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3. 원동기의 종류와 주요구조 및 성능
4. 동력전달장치의 종류와 주요구조 및 성능
5. 주행장치의 종류와 주요구조 및 성능
6. 차륜의 종류와 주요구조 및 성능
7. 배기장치 및 소음방지장치의 종류와 주요구조 및 성능
8. 차량중량 또는 차량총중량(다만, 증감율이 ±20%를 초과한 때에 한한다)
9. 기타 소음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

제4조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검사를 받은 자동차(동일형식의 변경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계속하여 제작하는 자는 매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제7조의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월 생산량 및 수입량이 1,500대미만은 1대이상
2. 월 생산량 및 수입량이 1,500대에서 3,000대미만은 2대이상
3. 월 생산량 및 수입량이 3,000대에서 5,000대미만은 3대이상
4. 월 생산량 및 수입량이 5,000대이상은 4대이상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입

회시킬 수 있다.

제5조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음검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음검사 시기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6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수시검사 및 보고등) ①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검사 및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소음 시험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 검사는 별표의 시험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 제작자등의 의무) ①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제7조의 자동차소음 시험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검사에 필요한 시험장소 및 시험기기를 보유하여야 하며, 시험기기 등은 항성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 검사과정의 모든 자료는 별지2호서식에 기록하여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동차의 소음 검사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제작자등이 보유한 시험장소 및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제작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작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자가 보유장비의 고장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 (자동차 소음검사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소음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용자동차
2. 체약국자동차
3.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4. 기타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부 칙

이 고시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음검사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

Ⅰ.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2륜자동차, 측차부 2륜자동차 및 원동기부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배출되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 적용한다.

2. 시험항목

가. 가속주행소음 시험

나. 배기소음 시험

다. 경적소음 시험

3. 시험조건

가. 시험자동차

시험자동차는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구조, 장치 및 성능등이 제원표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가속주행소음 시험에 있어서는 (1)부터 (6)까지, 배기소음 시험에 있어서는 (1)부터 (4)까지, 경적소음 시험에 있어서는 (1)항의 상태이어야 한다.

(1) 점검, 정비요령등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점검,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주행시에 보통 가동되는 부속장치등은 항상 정상가동 상태이어야 한다.

(2) 적당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열되어 있어야 한다.

(3) 견인자동차는 가속주행소음 시험때에는 피견인 자동차와 연결된 상태이어야 하고, 배기소음 시험때에는 연결안된 상태이어야 한다.

(4) 시험자동차는 연료, 냉각수, 윤활유(예비타이어, 예비부품, 공구, 기타 그밖의 휴대물품은 제외)를 만재하고, 시험에 필요한 장치를 부착한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1~2인(운전자 포함)이 승차한 상태이어야 한다.

(5) 타이어의 공기압은 제원표에 기재된 타이어의 표준공기압이어야 하며, 주행전 냉각시에 수평면에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6) 구동축을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가지 주행시에 보통 사용되고 있는 구동축에 의해 구동되는 상태이어야 한다.

나. 시험장소

(1) 시험도로는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이어야 한다.

(2) 소음측정을 행하는 장소는 가능한한 주위로부터 음의 반사와 흡수 및 암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방된 장소로서 부도1의 소음측정구간 중심점(C지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는 흙더미, 돌등의 돌출장애물이나 지면의 높낮이가 없어야 하며, 주위 암소음의 크기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크기보다 적어도 10dB이하이어야 한다.

(3) 소음측정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상높이가 1.2m인 위치에서 측정한 풍속이 2m/sec 이상일 때에는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10m/sec 이상일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험기기

(1) 소음측정기는 보통(지시)소음측정기 또는 정밀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시계의 동작특성은 "빠름동작특성(Fast)"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자동기록장치는 소음측정기에 접속된 상태에서 정밀도 및 동작특성등의 성능이 보통(지시)소음측정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동작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빠름동작특성(Fast)"에 준하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차속측정장치에 있어서 광전관방식의 경우에는 부도1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여 시험자동차 앞끝이 부도1에 표시된 차속측정구간을 통과하는데 요하는 시간을 1,000분의 1초이하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하며, 차광판은 시험자동차 앞부분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광전관방식 이외의 방식으로서 시험자동차의 앞끝이 부도1에 표시된 차속측정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광전관방식과 동등한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일 경우에는 차속측정장치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측정방식에 따라 차속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속확인장치(가속페달을 전깊이로 밟아 드로틀밸브를 완전히 연 상태임을 시험자동차의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장치)는 시험자동차의 우측(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방향에서 가속상태를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하며, 그 확인방식등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5) 회전속도계(시험자동차에 부착된 회전속도계는 제외)는 시험자동차의 원동기 회전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의 것이어야 한다.

(6) 이상의 시험기기는 기기제작자 또는 검사관이 정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시험직전에 충분한 예열 및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

가. 가속주행소음 시험방법

가속주행소음 시험은 시험자동차를 다음 (2)항의 운전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속주행시켜서 시험자동차가 부도1에 표시된 소음측정구간에 있는동안 시험자동차로 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에 의한다.

(1) 마이크로폰 위치

가속주행소음 시험에 이어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부도1에 표시된 M_1(필요에 따라서는 M_2)을 지나는 연직선으로 부터의 수평거리가 0.05m이하인 동시에 지상높이가 1.2±0.05m인 위치로 하고, 그 방향은 부도1의 기준선에 직각이며 지면과 평행하여야 한다.

(2) 운전방법

(가) 시험시작 10분전부터 시험자동차를 충분히 예열시킨 다음에 시험자동차의 앞끝이 부도1에 표시된 B지점에 도달할 때부터 시험자동차의 후미(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시험자동차는 견인자동차의 후미)가 부도1에 표시된 D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페달을 전깊이로 밟아 드로틀밸브가 완전히 열린 상태로 가속주행시켜야 하며 시험자동차의 차량중심선은 가능한한 부도1에 표시된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주행시켜야 한다.

(나) 시험자동차가 부도1에 표시된 A지점

에 진입할 때의 사용변속기어 및 지정속도는 부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허용범위는 지정속도 ±1.5km/hr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5, 가항의 확인방법에 의하여 시험자동차가 오버런(시험자동차 후미가 부도1에 표시된 D지점에 도달할 때의 속도가 당해 변속기어에 의해서 시험자동차의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회전속도로 주행할 때의 속도를 초과하는 것)할 경우에는 한 단계위의 변속기어를 사용변속기어로 한다.

(다)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로서 가속주행을 행할 때에 작동하는 변속기어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도1의 A지점과 E지점에서 속도의 차가 가장 크게 되도록 하는 변속기어가 작동할 때의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시험자동차의 속도측정은 부도1에 표시된 A지점 및 E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배기소음 시험방법

배기소음 시험은 시험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차시킨 아이들링 상태에서 시험자동차를 원동기 최고출력시 회전속도의 60% 회전속도 ±100rpm으로 연속하여 10초동안 무부하 운전시켜서 그 동안에 시험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에 의한다.

다만, 구조상 회전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원동기인 경우에는 회전속도의 평균치가 상기의 회전속도 범위내의 회전속도이어야 한다.

(1) 마이크로폰 위치

배기소음 시험에 있어서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는 시험자동차의 배기관 개구부끝으로부터 배기관 개부구 연장중심선 방향으로 20m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연직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0.05m이하인 동시에 지상높이가 1.2±0.05m인 위치로 하고 그 방향은 당해 시험자동차의 배기관 개구부 중심점을 향하여 지면과 평행하여야 한다. (부도2 참조)

다만, 시험자동차의 배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자동차의 우측 측면과 가까운 쪽 또는 동향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배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배기소음 측정치를 가장 크게 나타내는 위치이어야 한다.

다. 경적소음 시험방법

경적소음 시험은 시험자동차의 원동기가 정지된 정차상태에서 시험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동안 작동시켜 그 동안에 경음기로 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에 의하며, 2개이상의 경음기가 연동하여 음을 발하는 경우에는 연동하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측정지는 시험개시전에 정규 충전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만, 교류식 경음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원동기 회전속도가 3,000±100rpm인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마이크로폰 위치

경적소음 시험의 경우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는 시험자동차의 차량 중심선상에서 시험자동차 앞끝으로부터 전방으로 2m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연직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0.05m이하인 동시에 지상 높이가 1.2±0.05m(2륜자동차, 측차부 2륜자동차 및 원동기부 자전거는 1±0.05m)인 위치로 하고, 그 방향은 당해 시험자동차를 향하여 차량중심선에 평행하여야 한다. (부도2 참조)

5. 오버런 확인

가. 확인방법

(1) 시험자동차의 상태는 3, 가항의 가속주행소음 시험에 있어서의 상태이어야 한다.

(2) 운전방법은 4, 가, (2)항 ((나)항의 단서조항, (다)항 및 (라)항은 제외)의 운전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가속페달을 전깊이로 밟아 드로틀 밸브를 완전히 연 시점은 시험자동차의 앞끝이 부도 1에 표시된 B지점을 통과한 후이어야 한다.

(3) 시험자동차의 속도측정은 부도1에 표시된 A지점 및 F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이때 소음의 크기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나. 판정기준

시험자동차의 부도1에 표시된 A지점에서의 속도는 부표 1에 기재된 지정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도1에 표시된 F지점에서의 속도가 부표 1에 기재된 사용변속기어에 의한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회전

속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를 초과할 때에는 오버런으로 판정한다.

6. 측정치의 기록등

가. 시험항목별로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크기는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의 크기는 소음측정기 지시치의 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나. 자동차로 인한 소음 크기의 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항목별로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측정치의 차이가 2dB를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측정치는 무효로 한다.

다. 암소음 크기의 측정은 각 시험항목별로 시험실시의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라.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dB이상 10dB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부표 2의 보정량을 뺀값을 보정치로 하고, 3dB미만인 경우의 측정치는 무효로 한다.

마.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2회이상 측정치(보정할 경우에는 보정치)의 범위내에서 가장 큰쪽의 값을 시험의 성적으로 한다.

Ⅱ. 운행하는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운행하는 자동차(2륜자동차, 측차부 2륜자동차 및 원동기부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배출되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 적용한다.

2. 시험항목

가. 배기소음시험

나. 경적소음시험

3. 시험조건

가. 시험자동차

시험자동차는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이거나, 구조, 장치 및 성능등이 제원표 또는 자동차 검사증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배기소음시험에 있어서는 (1)부터 (3)까지, 경적소음 시험에 있어서는 (1)항의 상태이어야 한다.

(1) 점검, 정비요령등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점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적당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열되어 있어야 한다.

(3)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 자동차와 연결 안된 상태이어야 한다.

나. 시험장소

(1) 소음측정을 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주위로부터 음의 반사와 흡수 및 암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않는 개방된 장소로서 마이크로폰 설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3m이내에는 돌출장애물이 없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평탄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주위 암소음의 크기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크기보다 가능한 한 10dB이하이어야 한다.

(2) 소음측정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의 높이에서 측정한 풍속이 2m/sec이상일 때에는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10m/sec이상일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험기기

(1) 소음측정기는 보통(지시)소음측정기 또는 정밀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시계의 동작특성은 "빠름 동작특성(Fast)"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자동기록장치는 소음측정기에 접속된 상태에서 정밀도 및 동작특성등의 성능이 보통(지시)소음측정기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동작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빠름 동작특성(Fast)"에 준하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시험기기는 기기제작자 또는 검사관이 정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시험직전에 충분한 예열 및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

가. 배기소음 시험방법

배기소음 시험은 시험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차시킨 아이들링 상태에서 시험자동차를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회전속도까지 4초동안 무부하급 가속 운전시켜서 그 동안에 시험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에 의한다. (부도 3참조) 다만, 중립위치의 변속기어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추진축의 바퀴를 지면으로부터 들어올린 상태에서 측정한다.

(1) 마이크로폰 위치

배기소음 시험에 있어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시험자동차의 배기관 개구부 끝으로부터 배기관 개구부 중심선에 45°±10°의 각(차체 외부면으로부터 먼쪽)을 이루는 연장선 방향으로 0.5m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상높이가 배기관 개구부 중심높이 +0.05m인 위치로 하되 최소높이가 지면으로부터 0.2m이상이어야 하며, 그 방향은 당해 시험자동차의 배기관 개구부 중심점을 향하여 지면과 평행하여야 한다. (부도 4참조)

다만, 시험자동차의 배기관 개구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자동차의 우측 측면과 가까운 쪽 배기관개구부에 대하여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자동차의 배기관 개구부가 차체 상부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배기관 개구부 끝으로부터 배기관 개구부 중심선의 연직선 방향으로 0.5m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상 높이가 배기관 개구부

중심 높이 ±0.05m인 위치로 하며, 그 방향은 지면의 상향으로 배기관개구부 중심선에 평행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타 동항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배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배기소음 측정치를 가장 크게 나타내는 위치이어야 한다.

나. 경적소음 시험방법
경적소음 시험은 Ⅰ.4.다항의 경적소음 시험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측정치의 기록등
측정치의 기록등은 Ⅰ.6.항의 측정치의 기록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표 1〕

가속주행소음시험시 사용변속기어 및 지정속도

시험자동차의종류	사 용 변 속 기 어	부도 1의 A지점 진입시의 지정속도
수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	2단부터 4단까지의 변속기는 2단을, 5단 이상의 변속기는 3단을 사용변속기어로 한다. 다만, 2륜자동차(측차부 2륜자동차 및 원동기부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2단 및 3단의 변속기는 2단을, 4단의 변속기는 3단을, 5단이상의 변속기는 4단을 사용변속기어로 한다. 또한, 보조 변속기를 갖춘 경우에는 당해 변속기의 변속기어 범위내에서 변속비가 가장 작은 것을 사용변속기어로 한다.	다음의 속도중에서 낮은 쪽의 속도 (1) 사용변속기어란에 기재된 변속기어를 사용하여 원동기 최고출력시 회전속도의 $\frac{3}{4}$의 회전속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 (2) 50km/hr 다만, 125cc이하의 2륜자동차는 40km/hr, 50cc이하의 2륜자동차는 25km/hr
반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	평탄 포장도로를 가속주행하는 때에 보통사용되는 변속기어를 사용 변속기어로 한다. 다만, 2단 및 3단 변속기는 2단을 사용변속기어로 한다.	다음의 속도중에서 낮은 쪽의 속도 (1) 사용변속기어란에 기재된 변속기어를 사용하여 평탄 포장도로를 주행할 경우의 최고속도의 $\frac{3}{4}$의 속도 (2) 50km/hr 다만, 125cc이하의 2륜자동차는 40km/hr, 50cc이하의 2륜자동차는 25km/hr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	시가지를 주행하는 때에 보통 사용되는 변속기어를 사용변속기어로 한다.	
변속기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다음의 속도중에서 낮은 쪽의 속도 (1) 원동기 최고출력시 회전속도의 $\frac{3}{4}$의 회전속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 (2) 50km/hr 다만, 125cc이하의 2륜자동차는 40km/hr, 50cc이하의 2륜자동차는 25km/hr

(주) 지정속도란의 최고속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주행성능곡선도로부터 구해진 속도를 말한다.

〔부표 2〕

암 소 음 에 대 한 보 정

(단위 : dB(A), dB(C))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	3	4-5	6-9
보 정 치	−3	−2	−1

[별지 제 1 호서식]

자동차소음 최초검사(생략승인)신청서					처리기한 15일
신청인	①상호및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신청내용	④자 동 차 명		⑤구 분	제작 수입(대)	
	⑥차 종		⑦사용연료명		
	⑧제 작 장 소				
	⑨검 사 장 소		⑩검사예정일	19 . . .	

자동차소음허용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6-11호) 제 3 조제 1 항(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음 최초검사(생략승인)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

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자동차 주요제원표 1통 2. 자동차 명세제원표 1통 3. 자동차의 장치표 및 외관도 1통 4. 기본차종과의 변경사항 설명서(생략의 경우) 1통 5. 기본차종에 대한 1,2,3호 서류(생략의 경우) 각 1통 6. 생략승인에 필요한 관계증명서류(생략의 경우) 1통	수수료 없 음

5303-19 B
82. 8. 9 승인

190㎜ × 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 2 호서식]

(업체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19 . . .
수 신 : 환경청장 발신 : ㊞

자동차 소음검사 결과보고서

1. 검사자동차 제원

차 명(차종)		형 식	
차 대 번 호		감 속 비	
변속기 종류	□수동, □반자동, 자동, □기타 : ( )단 기어		
원동기 형식	최 고 출 력 PS/rpm	총 배 기 량	cc
차 량 중 량	kg 차량총중량 kg	구동륜타이어등하중반경	m

2. 검사조건 및 기기

기 후		풍 향		풍 속	m/sec
소음측정기		자동기록장치			
차속측정장치	□광전관, □제 5 륜, □레이다, □기타 :				

3. 검사성적

가속주행 소음시험	측정회수	사용변속기어 (변속비)	지정속도 (km/hr)	시험속도(km/hr) 진 입	시험속도(km/hr) 탈 출	암 소 음 (dB(A))	가속주행소음(dB(A)) 측 정 치	가속주행소음(dB(A)) 보 정 치	성 적 (dB(A))	비 고
	1	(단)								
	2									

배기소음 시험	측정회수	원동기 최고출력시 회전속도의 60%의 회전속도(rpm)	암 소 음 (dB(A))	배기소음(dB(A)) 측 정 치	배기소음(dB(A)) 보 정 치	성 적 (dB(A))	비 고
	1						
	2						

정지소음 시험	측정회수	정음기 형식	정음기 수효	원동기 회전속도(rpm)	암 소 음 (dB(C))	정적소음(dB(C)) 측 정 치	정적소음(dB(C)) 보 정 치	성 적 (dB(C))	비 고
	1								
	2								

오버런 확인	사용변속기어(변속비) (단)	진 입 지정속도(km/hr)		탈 출 원동기최고출력시 회전속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km/hr)	
		시험속도(km/hr)		시험속도(km/hr)	
	오버런의 확인에 의하여 결정된 가속주행소음 시험의 사용변속기어				단

4. 비 고

5303-20 B
82. 8. 9 승인

268㎜ × 380㎜
(인쇄용지(2급)60g/㎡)

〔부도 1〕

가속주행소음시험의시험기기설치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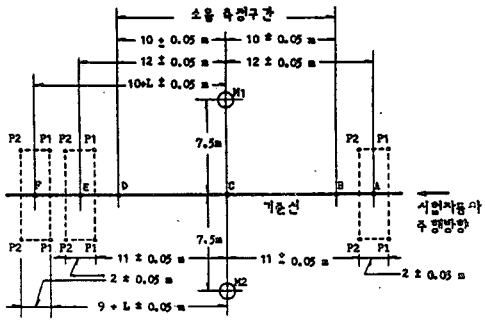

B : 소음측정 구간 진입점

D : 소음측정 구간 탈출점

A, E 및 F : 차속측정 지점

(A, E : 가속주행소음 시험시,
A, F : 오버런 확인시)

M_1, M_2 : 가속주행소음 시험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

P_1, P_2 : 광전관방식의 차속측정장치 설치위치

$\overline{P_1 P_2}$: 광전관방식의 경우의 차속측정 구간

L : 시험자동차의 전장(차광판을 갖춘 시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광판의 앞끝에서부터 당해 자동차의 후미까지의 길이)

〔부도 2〕

배기소음및경적소음시험시마이크로폰설치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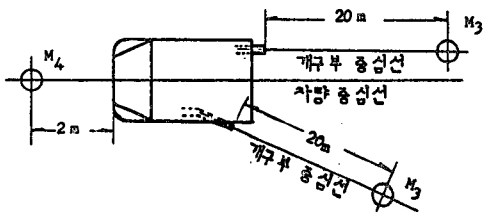

M_3 : 배기소음 시험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

M_4 : 경적소음 시험시 마이크로폰 설치위치

〔부도 3〕

운행하는자동차배기소음시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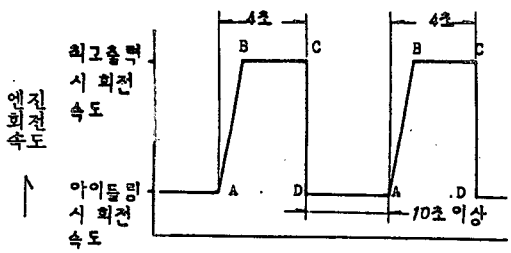

A : 무부하급가속 시작점

$\overline{BC}$: 최고출력시 회전속도 유지시간

C : 무부하급가속 종료점

〔부도 4〕

운행하는자동차배기소음시험시마이크로폰설치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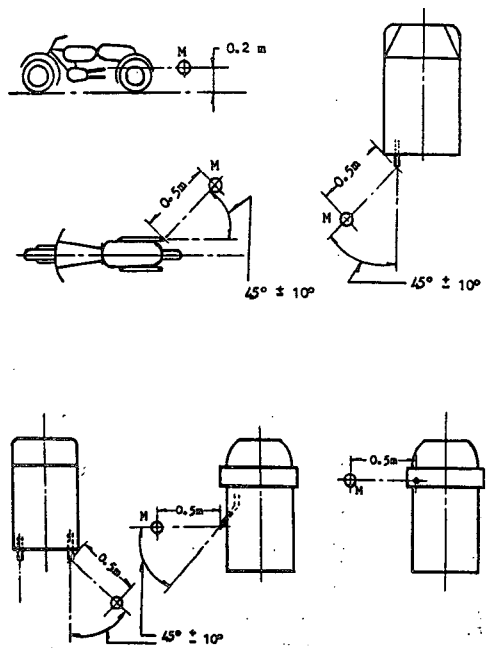

◉상공부고시제86-20호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상공부고시 제79-11호 79. 4. 2, 제80-9호 80. 5. 12, 제82-25호 82. 6. 21, 제83-16호 83. 4. 25)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6년 6월 4일

상 공 부 장 관

제1조 (제 목) 이 고시는 제조업종별 공장용지 이용의 적정화를 기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제조업부문의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기준공장면적율) 공업배치법 제6조제1호의 제조업종별 공장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공장면적율 : $\left(\frac{\text{공장건축면적}}{\text{공장대지면적}} \times 100\right)$ 별첨

2.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범위

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건축물(구축물 포함)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옥외사업장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로 한다.

나. 전 "가"호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 5년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할 수 있다.

다.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대지면적"에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철로, 6m이상 도로, 접도구역 및 저수지(침전지 포함)의 면적은 제외한다.

제4조 (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 공업배치법 제6조제2호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녹지면적율

가. 공장건축연면적이 1,000m²미만의 공장은 대지면적의 5/100이상

나. 공장건축면적이 1,000m²이상 2,000m²미만의 공장은 대지면적의 10/100이상

다. 공장건축연면적이 2,000m²이상의 공장은 대지면적의 15/100이상

라. 이 고시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기준의 1에 적합한 수목이 자라고 있는 10m²이상의 구획토지
(가) 수관의 수평투영면적
(나) 10m²당 교목(성목으로서 수고 4m이상) 1본이상이 있는 곳
(다) 20m²당 교목 1본이상 및 저목 20본이상이 있는 곳

(2) 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표식물(제초등을 한 것에 한함)로서 지표가 덮혀 있는 10m²이상의 토지

2. 환경시설 면적율

가. 녹지를 포함한 환경시설면적은 공장대지면적의 25/100이상이어야 한다.

나. 이 고시에서 "환경시설"이라 함은 분수, 냇물(수류), 연못 기타 수경시설과 옥외운동장, 광장 기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어 공장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기여하는 구획토지를 말한다.

제5조 (공해업종의 입지제한) 시·도지사는 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부표(17)의 1호의 공해공장등과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배출공장을 상수원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에 설치하는 경우

2. 오염물질 배출공장이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3.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환경등 자연조건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

제6조 (적용의 예외) ①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제3조 또는 제4조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종전고시 또는 이 고시 이전에 이미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기준공장면적율 등을 달리 적용받고 있는 공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공장대지면적이 3,000m²미만의 공장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은 종전 고시의 예에 의한다.

○공업진흥청

공업표준화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공업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년 6월23일 공업진흥청장

고 시 내 용

고시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구분
86-737	KS M 8230	황산나트륨(시약)	개정
86-738	KS M 8023	이산화망간(시약)	〃
86-739	KS M 8022	티오황산나트륨(시약)	〃
86-740	KS M 1102	용해아세틸렌	〃
86-741	KS M 8112	아황산나트륨(시약)	〃
86-742	KS M 8113	아황산나트륨(무수)(시약)	〃
86-743	KS M 8234	질산납(시약)	〃
86-744	KS M 8042	요오드(시약)	〃
86-745	KS M 8024	리트머스(시약)	확인
86-746	KS M 8025	리트머스종이(시약)	〃

※ 규격내용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동부교육구청공고제 8 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공고

학교보건법 제 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86년 6 월25일

동부교육구청장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 모집장소

(5) 오물 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 시설 및 분뇨종말처리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오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식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정화구역설정대상학교일람표

유치원명	소재지
서라벌유치원	동대문구 장안동 358-1
면일유치원	동대문구 면목1동 100-54
새로나유치원	동대문구 묵2동 244-150
연세유치원	동대문구 전농3동 38-4
보람유치원	성동구 자양동 227-295
미동유치원	동대문구 중화동 315-1
새에지유치원	동대문구 중화동 286-24
성수유치원	성동구 성수2가 236-1

"会員社 여러분의 紙面을 활용하십시오"

環境保全協会報는
바로 여러분의 紙面이자 대변지입니다.
그러므로 会員社 여러분들이 활용코자 하시면
최대한 여러분의 지면을 마련해 드리겠읍니다.
특히 本報의 「회원사동정」은 会員社들의 게시판이나 다름없읍니다.
社内에서의 신제품개발, 人物동정, 흐뭇한 美談이 있으시면
六何原則에 의거하시어 本協会 홍보부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사화시키겠읍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홍보부